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97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 조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장애인복지법)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17개 자치구) 무 <input type="checkbox"/>
	● 민 간 단 체 : 유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무 <input type="checkbox"/>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계획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재활서비스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I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장애인복지과-9230호, 2012.5.1)

□ 추진경위

-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거주시설 운영비 국비 50% : 시비 50% ⇒ 시비 100%로 변경
 - ※ 정부에서는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분권교부제로 일괄하여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 1,000천원('05)⇒5,000천원('09)⇒6,000천원('12)⇒8,000천원('13)
- 와상, 영유아시설 종사자 추가지원(市자체)
 - 2009년 : 영락애니아의집(5명), 쉼터요양원(6명)
 - 2011년 : 한사랑마을(9명), 한사랑장애영아원(5명), 디딤자리(2명)
 - ※ 기준 : 와상장애인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0명당 1명씩 추가지원(11.2)
- 종사자 추가지원을 위한 중증의 범위 변경('13년)
 - 1급 ⇒ 1~2급, 생활재활교사 4.7명당 2명 지원

□ 사업내용

○ 거주시설 이용자 입·퇴소 관리

- 입소대상

- 무료입소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실비입소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입소가 결정된 자

- 입소절차 : 입소신청(장애인·가족) ⇒ 상담·가정실태 조사(자치구) ⇒ 입소의뢰(자치구→시설) ⇒ 입소판정(시설)

- 퇴소절차 : 사망·원가정 복귀·타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퇴소시 자치구 및 이용자가정에 통보하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서 받아 퇴소

○ 이용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지원 및 요양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지원

- 분기별 정기 지원액

- 인건비 : 기본급, 수당, 4대보험료(시설부담분)
- 관리비 : 시설기본비, 장애인가중지원, 영양급식비, 사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특수차량운영비

- 시기별 기타 지원액

- 위문금 등 : 위문금(4회), 춘계부식비, 김장비, 하계수련대회비 등
- 기 타 : 대체인력비, 퇴소자정착금, 대학학자금, 겨울철난방비, 외부활동 지원비

※ 사업비 지원내역 변경사항

(단위: 천원, 시간, 인, 개소)

구분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시설기본지원 (연간)	복지부	31,080	-	34,153	35,177	36,232	37,318	38,438	39,591	미정
	서울시	31,080	32,000	32,960	33,948	35,177	35,177	35,177	35,177	39,591
장애인가중지원 (1인당)	복지부	467	-	512	527	543	559	576	593	미정
	서울시	480	480	492	495	495	495	495	495	495
연장근로수당 (시간)	복지부	15-4	-	-	56-40	56-40	56-40	56-40	56-40	미정
	서울시	20-8	20-8	20-8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퇴소자정착금 (1인당/1회)	복지부	-	-	-	-	-	-	-	-	-
	서울시	1,000	1,000	3,000	3,000	5,000	5,000	5,000	6,000	8,000
운전원 관리인간병인	서울시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와상 영유아 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서울시					2개소	2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 보건복지부 입법 및 정책 동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시설의 설비기준·종사자의 직종분류 및 배치·자격기준, 거주시설 이용요건 완화 등 일부개정 추진

○ 대규모시설의 단계적 소규모화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 인권침해 등 부작용 해소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함
-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시설로 단계적 전환
-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등 지역사회 소규모시설의 확충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13년중)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고시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기준 연구용역 추진

II 추진실적 분석

□ 서울시 장애인 및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

- 장애인 등록현황 : 407,528명(전체 인구의 3.9%)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현황(2012.12.31)

구분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시설수	43개소	3	3	1	13	21	2	
이용자	정원	3,896	240	202	62	1,079	2,203	110
	현원	3,147	207	143	41	923	1,745	88

□ 시설 수 및 이용자 변동추이(최근 6년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설수	36	39	41	43	43	43	
이용자	정원	3,671	3,733	3,850	3,811	3,896	3,896
	현원	3,224	3,277	3,236	3,153	3,178	3,147
종사원	정원	1,498	1,800	1,885	1,917	1,950	1,950
	현원	1,485	1,737	1,824	1,807	1,827	1,817

- '08년까지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09년부터 감소 추세
- '11년 종사자와 이용자 증가 요인은 '10년 2개소 개원으로 증가
- 이용자 수 감소원인은 가정복귀, 취업, 자립생활체험홈 입주 등으로 인한 것임

□ 예산지원 실적 분석(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연도별	시설수	집행액 총계	운영비	위문금 수련대회비	총계부식비 김장비	퇴소자 정착금	난방비	생활인 대학등록금	기타보상비 등
'12	43	71,750,968	70,986,294	221,120	39,451	72,000	412,868	17,335	1,900
'11	43	67,376,983	66,438,491	219,681	39,654	45,000	419,272	17,154	197,731
'10	43	63,089,496	62,317,105	221,970	39,595	95,000	405,589	10,237	
'09	41	61,520,988	60,710,170	226,100	40,255	150,000	388,731	5,732	
'08	39	57,486,134	56,781,856	226,830	40,474	60,000	376,974	0	

- '12년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11년 대비 인건비 증가(5.7%인상) 때문임
('09→'10 : 2.5%, '10→'11 : 6.8%, '11→'12 : 5.7%)

□ '12년 주요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근절대책 시행을 통해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보장 강화(2012. 1월)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인권지킴이단(시설), 인권감독관(자치구) 구성·운영
 -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로 인권의식 고취 및 인권침해 예방
- 탈시설화를 위한 퇴소자 정착금액 증액
 - 1인당 6백만원('11년)에서 '12년 8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

□ 문제점

- 거주장애인 탈시설 안내 및 지역사회 이용시설 활용기회 미흡
 -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내 자립육구 의사가 인권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남
 - 탈시설 및 자립정착을 위한 퇴소자정착금 지원액이 자립을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거주시설 이용자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내 이용시설 프로그램 이용기회가 적음

- 중증장애인 케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사자의 근무환경 열악함
 -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중증(1~2급)과 달리 1급만 중증으로 하여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 케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직으로 대인관계에 민감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음
 - 중증와상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 추가지원 요구
- 시설 물품관리 및 종사자 근무실태 등 시설운영 확인관리 어려움
 - 시설 종사자 근무실태 관리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시설내 장비 및 비품내역에 대한 물품관리대장 관리 부실
 - 일부 시설에서 운영비 집행에 대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실적 미흡
-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미지원
 - '13.1월 현재 개인운영시설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시설 기준 미달로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 지방소재 시설 지도·감독의 어려움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등) 규정에 의하면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인 소재 관할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시설 이용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추진
 - 이용장애인 탈시설 활성화를 위한 자립프로그램 참여 유도
 - 시설에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단계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참여
- 시설 이용장애인의 외부활동 지원
 - 시설 이용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지원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등 외부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IL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시설프로그램 활용기회 확대
 - 상담지원(IL센터),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용기회 확대(장애인복지관)

- 시설운영 관리 투명성 제고
 - 시설장 및 종사자 근무실태 관련 수시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 장비 및 물품은 구입시 관리대장 등록 확행, 재물조사 년 1회 점검시 병행
 - 보조금 전용카드제 및 후원금 투명성 관리
- 지도·감독 실시
 - 정기점검 : 연 2회 이상(자치구 협조)
 - 수시점검 : 취약분야(회계, 계약,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
 - 지방소재 시설의 지도·감독은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추진
-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 현재 조건부 시설로 운영 중인 개인운영신고시설 7개소에 대해 운영비 등 2014년부터 지원 방안 마련(법정시설 전환 독려)

Ⅲ 2013년 추진계획

□ 2013년 예산액 : 77,839,807천원(시비 100%)

(단위 : 천원)

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퇴소자정착금	사회복지시설 평가수당	업무추진비
77,839,807	71,636,320	5,941,392	240,000	20,295	1,800

※ 중증장애 범위 확대에 의한 생활재활교사 추가지원은 '13. 7월부터 반영

※ 관리운영비 포함 : 이용인대학학자금(80,000천원), 난방비(466,427), 대체인력(206,400천원)

□ **추진방향**

-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연계노력을 통해 시설의 개방화를 추진하여 운영관련 투명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폐쇄적인 시설운영 지양
- 시설 이용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 및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한 상시 교육 체계 구축
- 보조금 집행 등 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계획

① 시설의 개방화 및 자립지원 강화

-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서울소재 시설은 '13년부터 실시하고 지방소재 시설은 근거리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의하여 실시예정)
 -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등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 외부나들이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 지원시간 : 1인당 연 10시간
 - ⇒ 1인당 연간 10시간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이용자, 중증장애인 등 시간적 차등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지원내용 : 시설 외부 지역사회 각종 개별활동 지원(단체활동 지양)
 - 지원방법 : 활용계획 작성 및 제출 ⇒ 분기별 자치구 신청 ⇒ 예산 재배정 ⇒ 정산보고
- 개인별 자립지원 강화
 - 시설에서 이용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 퇴소자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내인 자
 - 지원금액 인상 : '12년 6백만원/1인 → '13년 8백만원/1인
- 시설별 개방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에서 개방적인 시설운영 추구로 지역통합 기반 조성
 - 시설 이용장애인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강화

②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지속적인 실시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실시
 - 인권감독관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 종사자 교육, 지도감독 강화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상시화(연 8시간)
 - 서울시복지재단 인권 관련 교육과정 활용한 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③ 거주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 종사자, 이용자 현황 등 전산화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시설 현황 자료 월별 수정입력(시설)
 - 입력자료 근거로 설위문금 등 시기별 지원금에 참고하여 활용도 제고
- 보조금카드 사용 독려
 - 부식비, 유류비,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적극 사용
 - 소액 경비 지출(1만원 이상 지출시) 전용카드 의무 사용
- 회계 관련 지도감독, 종사자 교육
 - 시설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복지재단 협조)
- 업무추진비 공개
 -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시민신뢰 제고
 - 시설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

④ 시설 환경개선 및 소방시설 설치

- 대형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계획 및 소규모화
 -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후 단계적 추진
 -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사생활보호 제고
- 소방관련 시설 설치
 - 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단계적 추진

⑤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지원기준 변경 및 인건비 인상

- 중증와상장애인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추가지원

⇒ '12년말 현재 5개 시설 27명 추가지원 중이며, 상반기에 시설 이용장애인의 현황 조사 후 추가지원 실시

- 종사자 지원기준 관련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 1급 ⇒ 1~2급

⇒ '12년까지 1급만 중증으로 인정하여 4.7명당 2명의 종사자를 지원하였으나,

'13년부터 중증범위를 2급까지 확대하여 종사자 지원 추진(하반기부터 실시)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장애인은 1급 우선입소 준수 및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종사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시행

-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기본급 평균 4.2% 인상(총액기준 3.8%)

○ 대체인력비 지원

- 소요예산 : 206,400천원

- 지원일수 : 시설당 기본 50일(이용장애인 수에 따라 가중지원)

- 종사자의 휴가(경조사포함) · 교육 · 연수 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⑥ 시립평화로운집 재위탁 추진

○ 시립평화로운집 현황

- 소재지 : 은평구 구산동 산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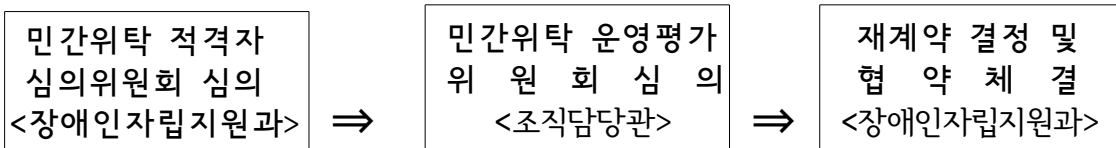
- 개원일 : 2005. 1. 1.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위탁기간 : 2011. 1. 1 ~ 2013. 12. 31(1회 위탁)

○ 재위탁 절차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거쳐 재계약 결정



※ 재계약인 경우 시의회 상임위 보고 대상임

IV 행정 사항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방법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자치구로 재배정, 시설 집행
- 예산 집행 일정

추진 사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주시설 운영비지원 (분기별)				
거주시설 설명절 위문금지원	5			
2013년도 거주시설안내지침 개정	15			
2012년도 거주시설운영비 정산 결산	28			
거주시설 춘계부식비 지원		15		
거주시설 하계수련회비 지원			1	
거주시설 추석위문금 지원				20
거주시설 김장비 지원				7
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15
거주시설 연말위문금 지원				15

홍보 계획

- 시설 주요사업 및 특화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 거주시설별 주요사업 홍보목록 작성
 - 거주시설별 주요 특화사업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기획홍보 추진
-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거주시설 전체로 확산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자치구 협조사항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수시 체크,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
- 시설 이용자(현원) 관련 종사자 현원 관리 철저 등
 -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근무 관련 점검
 - 거주장애인 감축, 또는 증원으로 종사자 수 변동 있을 경우 종사자 증원 및 감원계획 제출

□ 거주시설 협조사항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로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 장애인인권헌장 등 인권보장 관련 자료 생활실 게시
-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문 생활실 게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 안내(안)〉

■ 인권센터 접수/상담실

- 위치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내 인권센터(전화 2133~6378/9)

■ 신청방법 : 문서,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전화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번지)
- 전 화 : 2133~6378/9, 팩스 : 2133~0797
- 이메일 : sangdam@seoul.go.kr
- <http://www.seoul.go.kr/v2012/oneclick/>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자료 입력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현황 입력

○ 장애인 전원시 자치구와 사전협의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승인절차 추진

- 붙임 1. 거주시설 유형별 운영비지원기준(기본급 및 수당지급 기준표)
2. 거주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기준
3. '12년 대비 변경된 내용

거주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

<정액수당>

수당종류	지원액
가계보조수당	50천원/월
교통급식비	110천원/월
원장,사무국장 수당	100천원/월
생활복지사수당	90천원/월
생활지도원수당	110천원/월
기타직 근무수당	90천원/월
가족수당	가족 20천원/월
	배우자 30천원/월
연장근로수당 (원장제외)	2교대 40시간/월
	일반 20시간/월
복지수당 (소종사자)	5년미만 240천원/월
	5년이상 290천원/월
장기근속수당	40~80천원/월

<정률수당>

수당종류	지급기준
기말수당	기본급의 200%/년
정근수당	기본급의 50~100%/년
가계지원비	기본급의 200%/년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년

○ 사용자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적립금, 장기요양보험료

※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하되 산재보험료는 실제 시설부담 보험료율에 맞추어 지원

○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지원액(천원)	지원기준	지원시기
시설당 기본지원	39,591	개소/년	분기별
거주인수기준 가중지원	495	인/년	분기별
영양급식비	0.5	인/일	분기별
사회교육 행사비	10,000	개소/년	분기별
의약품비	6,000	개소/년	분기별
춘계부식비	6	인/년	3월

지원항목	지원액(천원)	지원기준	지원시기
김장비	7	인/년	11월
위문금	40	인/년	4회
하계수련비	30	인/년	6월
퇴소자정착금	8,000	인	퇴소시
특수차량 운영비	2,772	1대/년	분기별
대학학자금	현액	인	신청시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봉급 지원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호봉)	원 장	사무국장	1)과장 및 생활복지사	2)생활지도원	3)기능직	시 설 관리인	축탁의사
1호봉	1,258	1,046	990	906	792	891	2,278
2호봉	1,295	1,081	1,023	933	821	919	-
3호봉	1,332	1,115	1,057	961	850	947	-
4호봉	1,368	1,151	1,091	989	879	974	-
5호봉	1,405	1,186	1,124	1,017	906	1,002	-
6호봉	1,441	1,221	1,159	1,044	934	1,030	-
7호봉	1,479	1,257	1,193	1,072	963	1,057	-
8호봉	1,515	1,291	1,227	1,100	992	1,085	-
9호봉	1,553	1,327	1,260	1,128	1,021	1,112	-
10호봉	1,589	1,361	1,294	1,156	1,050	1,140	-
11호봉	1,626	1,397	1,327	1,183	1,078	1,167	-
12호봉	1,662	1,431	1,360	1,209	1,108	1,195	-
13호봉	1,700	1,466	1,395	1,237	1,137	1,223	-
14호봉	1,736	1,503	1,428	1,265	1,166	1,250	-
15호봉	1,774	1,537	1,462	1,293	1,195	1,278	-
16호봉	1,810	1,573	1,496	1,321	1,224	1,306	-
17호봉	1,847	1,607	1,531	1,348	1,253	1,333	-
18호봉	1,883	1,642	1,564	1,376	1,281	1,361	-
19호봉	1,920	1,678	1,599	1,404	1,310	1,388	-
20호봉	1,956	1,713	1,632	1,432	1,339	1,416	-
21호봉	1,994	1,750	1,665	1,460	1,368	1,444	-
22호봉	2,030	1,784	1,699	1,485	1,397	1,471	-
23호봉	2,067	1,819	1,733	1,513	1,425	1,499	-
24호봉	2,103	1,854	1,767	1,541	1,453	1,526	-
25호봉	2,140	1,889	1,800	1,569	1,482	1,554	-
26호봉	2,178	1,924	1,834	1,597	1,511	1,582	-
27호봉	2,215	1,959	1,869	1,624	1,540	1,609	-
28호봉	2,251	1,993	1,902	1,652	1,569	1,637	-
29호봉	2,288	2,030	1,937	1,681	1,599	1,665	-
30호봉	2,324	2,065	1,970	1,709	1,627	1,692	-

1) 생활복지사 : 사회재활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운전원, 간병인

2) 생활지도원 : 생활재활교사, 사무원

3) 기 능 직 : 조리원, 위생원

※ 추가지원인력(1년 단위 결정) 봉급 및 수당지급

- 관리인 : 사무국장 봉급 및 수당지원규정 준용(직책수당 제외, 봉급표의 시설관리인이 아님)

- 운전원, 간병인 : 과장 및 생활복지사의 봉급과 수당지원규정 준용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 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 미만	봉급액의	55%	
		3년 미만	봉급액의	60%	
		4년 미만	봉급액의	65%	
		5년 미만	봉급액의	70%	
		6년 미만	봉급액의	75%	
		7년 미만	봉급액의	80%	
		8년 미만	봉급액의	85%	
		9년 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50	
		15~19년		60	
		20년이상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비				50	
다) 급식비				60	
다)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00%	
(3) 특수근무수당					
가) 직책수당	원장, 사무국장		정액	10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90	
다) 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110	
라) 기타직 근무수당	기 능 직			90	
(4) 연장근로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산출식 : 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5)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30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
(6) 기 타					
복지수당	전 종사자	5년미만	정액	240	매월 보수 지급일
		5년이상		290	
※ 촉탁의사는 봉급만 지원하고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예산범위내) - 2교대 근무자(생활재활교사 및 조리원) 월 40시간, 원장을 제외한 일반종사자 월 20시간까지 지원 - 통상임금 : 기본급+종사자수당+직책수당+생활복지사수당+생활지도원수당+기타직근무수당+조리위생수당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요망
 ※ 주 40시간 근무제 시설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액 : 통상임금×1/209×1.5 적용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종명	지원기준	
원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무원	이용장애인 100인 이상 시설당 1명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양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40인 이상인 시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영유아 60인 이상 1명 추가. 2명이상일 경우 1명은 간호사여야 함	
물리치료사	중증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시설당 1명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1~2급),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은 유형별 시설의 중복성장에도 해당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50인 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30인 이상 시설 이용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축탁의사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관리인, 운전원, 간병인	시설당 각 1명씩. 다만, 40명이상인 시설(1년 단위로 직종 변경예정)	

- ※ 신규 개원시설은 신고후 개원시설의 이용인 총원 1/2미만시 종사자 정원의 30%이내에서 인건비 지원 지원시기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함
- ※ 지방 소재시설의 경우 추가되는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의 승인 받아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간호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간호사로 채용해야 하는 시설에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계속 근무하고 급여는 간호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퇴직시 간호사를 채용토록 해야 함.
- ※ 거주시설의 이용인 감소시 종사자 감원계획 제출 (시설의 특별한 경우 제외)
- ※ 중증장애인 범위확대에 따른 종사자 추가지원은 하반기부터 실시예정

[붙임 2]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관련법령
	지 원 기 준	지 원 기 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월액 × 5.80% × 1/2 (사용자 2.90%, 가입자 2.90%)	보수월액 × 5.89% × 1/2 (사용자 2.945%, 가입자 2.945%)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9%×1/2 (사용자 4.5% 가입자 4.5%)	기준소득월액×9%×1/2 (사용자 4.5% 가입자 4.5%)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	임금총액×1/12	임금총액×1/12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8%	임금총액 × 0.8%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	임금총액 × 0.7%	임금총액 × 0.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 × 6.55%	건강보험료 × 6.55%	·국민건강 보험법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붙임 3]

○ '12년 대비 변경된 지원내용

구 분	2012년	2013년
종사자 지원기준	- 중증장애인(1급) 4.7명당 2명, (청각·언어·시각장애는 중복성장애에 한함)	- 중증장애인(1~2급) 4.7명당 2명 (하반기 실시 예정)
운영비 변경	- 종사자 인건비 대비	-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평균 4.2%)인상
시설 기본운영비	- 시설당 35,177천원	- 시설당 39,591천원
난방비 지원	- 1인당 133,510원	- 1인당 146,860원
퇴소자 정착금	- 6,000천원/1인	- 8,000천원/1인
외부활동 지원		- 장애인 1인당 연 10시간 활동보조 지원